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5호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 강릉시 의회의장

###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강릉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안 제5조)
- 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의회 설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바. 공모사업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 규정 (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
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설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

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강릉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